취득 형태 취득가액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포함),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단,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적격합병･적격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 법령§80의4① 및 §82의4①에 따른 장부가액(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은 제외)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시가 \*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물적분할･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물적분할：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현물출자 -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만 취득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 그 외의 경우：해당 주식의 시가 출연재산에 대해 과세가액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법§24③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함)은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 단,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